

<3.30(수) 석간 (인터넷 3.30(수) 06:00 이후)>



보도자료(Press Release)

▶ 2011. 3. 29. 배포
▶ 총 11 쪽

▶ 장애인고용과장 장미혜/ 사무관 이영진
▶ ☎ 02-2110-7307, 010-9178-1602

금융·보험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야

- 3.30.(수) 금융보험업종 대기업 조찬간담회 -

- ☐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은 30일(수요일)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금융·보험업종 27개 대기업 경영진과 조찬간담회를 갖고,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.
- ☐ 이번 조찬간담회에는 1,000인 이상 은행업 9개사, 증권업 10개사, 신용카드·할부금융업 2개사, 보험업 6개사 등 총 27개사 임원진이 참석하였으며
 - 국민연금공단·삼성증권·부산은행 등 3개사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장애인 채용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.
 - ▲ 국민연금공단('11년 상반기 신규채용시 10%<32명> 장애인 채용, 고용률 3.68%)
 - ▲ 삼성증권(아웃소싱을 인소싱으로 전환<청소>, 고용률 '05년 0.35% → '10년 2.74%)
 - ▲ 부산은행(장애인 특별채용 실시, 은행 최초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채용)
- ☐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'10년 6월 현재, 민간부문* 21,368개소의 장애인 고용률은 2.17%이며,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사업체는 총 11,118개소로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(* 공공기관: 2.43%, 민간기업: 2.15%)

-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은 300명 미만 기업이 2.51%, 300인 이상 기업이 1.96%이며, 특히 1,000인 이상 기업은 1.83%로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.

- 업종별로는 국제·외국기관이 6.60%로 가장 높고, 금융·보험업이 1.25%로 가장 낮으며, 특히 금융·보험업이면서 1,000인 이상 대기업(60개사)의 장애인 고용률은 1.15%로 매우 저조하며 이 중 4개사만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였다. .

□ 이채필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“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하면서

- “나눔과 배려의 가치 실현에 금융·보험업의 대기업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”을 요청하였다.

- 또한 앞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채용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발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, 업종별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정부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 적합 직무 분석, 모집·채용 대행 서비스 제공, 맞춤형 직업훈련, 청년장애인 시험고용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.

<붙임1>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금융·보험업 조찬간담회 계획 등

<붙임2> 금융·보험업종 장애인 채용 우수 사례

<붙임1>

금융·보험업 장애인 고용 사업주 간담회

□ 일 정

- 일시·장소 : '11.3.30.(수) 07:30 ~09:00 (팔레스호텔 로얄볼룸 1층)
- 참석자
 - 차관 주재
 - 1,000인 이상, 금융보험업 27개사 임원급
 - ※ 은행업 9개사, 증권업 10개사, 신용카드·할부금융업 2개, 보험업 6개사
 - 우수사례 발표기업(국민연금공단, 삼성증권, 부산은행)

□ 주요 회의 내용

- 금융·보험업 장애인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 설명
-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소개
- 애로 및 건의사항 논의 등

□ 진행 순서

시 간	내 용	비 고
07:30~07:40	○ 인사 및 환담	· 차관
07:40~07:50	○ 금융·보험업 장애인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	· 장애인고용과장 · 조 찬
07:50~08:30	○ 우수사례 소개	· 3개사
08:30~08:50	○ 애로 및 건의사항 논의	· 참석자
08:50~09:00	○ 장애인 고용 협조 요청	· 차관

I.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소개

□ 의무고용제도 개요

○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 중

- 국가·자치단체 및 공기업·준정부기관은 3%,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3%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

※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: ('10년) 2.3%, ('12년) 2.5%, ('14년) 2.7%

※ 외국의 의무고용률 : 프랑스 6%, 독일 5%, 오스트리아 4%, 일본 1.8~2.1%

- '10년부터 중증장애인 1명 고용하면 장애인 2명으로 인정하는 '중증장애인 2배수제' 운영

-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부담금 부과, 의무고용률 2.7%를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

※ 부담금: (의무고용 미달인원×1인당 월 56만원)의 연간 합계액

※ 장려금: 1인당 월 50만원~15만원(중증·여성 장애인 우대)

□ 의무고용 이행 지도

○ 매년 의무고용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체는 명단을 공표(장애인고용촉진법 제29조)

- '11년 의무고용 이행실태 점검 및 명단공표를 상·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할 예정

※ 명단공표: '10년 0.5% 미만 기업(276개사) → '11년 1.3% 미만 기업

○ '11년 부담기초액을 상향조정,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인상('11.3.9 법 개정)

<부담기초액 변화(1인당/월)>

장애인 고용률	2010년	2011년
1.15% 이상	53만원	56만원
1.15% 미만	79만 5천원(50% 가산)	84만원(50% 가산)
0%	50% 가산	최저임금 부과 ('11.7.1. 300인 이상)

Ⅱ.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

○ 총 관

- '10.6월말 현재, 의무고용제 적용 기업 **21,368개소**의 **장애인 고용인원은 98,134명**, **장애인 고용률은 2.17%** (중증 2배수 적용)이며,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은 52%에 불과

※ 민간부문: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%, 민간기업 및 기타공공기관 2.3%

- 우리나라는 **경증졸립현상**이 심하고, **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편**

※ 의무고용제 적용 기업의 장애인 중 중증 비율 19.3%, 인구 중 중증비율 35%

< 국가별 민간기업의 규모별 고용률 현황 >

(단위: %)

독일(2002)				프랑스(2001)		일본(2009)		한국(2010)	
20미만	2.7	500~1000	4.0	20~49	2.9	전체	1.63	전체	2.17
20~40	2.6	1,000~10,000	4.2	50~99	3.0	~99	1.4	50~299	2.51
40~60	2.8	10,000~50,000	4.6	100~199	3.0	100~299	1.35	300~999	2.19
60~100	3.1	50,000~100,000	4.1	200~499	3.0	300~499	1.59	1,000이상	1.83
100~250	3.3	100,000 이상	4.8	500 이상	3.1	500~999	1.64		
250~500	3.7					1,000이상	1.83		

○ 금융·보험업

- 업종별로는 금융·보험업(885개사)의 **장애인 고용률이 1.25%**로 21개 산업(대분류) 중 가장 저조

< 산업별 장애인 고용률 현황('10.6월) >

(단위: %)

산업분류	고용률	산업분류	고용률	산업분류	고용률
국제 및 외국기관	6.60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3.03	숙박 및 음식점업	1.71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3.95	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	3.03	교육 서비스업	1.55
하수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	3.20	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2.24	도매 및 소매업	1.38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3.52	부동산업 및 임대업	2.16	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1.37
운수업	3.44	제조업	2.09	농업, 임업 및 어업	1.36
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	3.09	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1.94	건설업	1.26
광업	3.07	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1.80	금융 및 보험업	1.25

Ⅲ. 금융·보험업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지원

- ◆ 금융·보험업은 대고객 응대 업무가 많고, 고객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적합하지 않다는 편견이 존재
 - 또한, 핵심직무 이외에 부수적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운영되어 장애인 고용창출 직무가 제한적
- ◆ 금융·보험 대기업이 적극적인 장애인 직무발굴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
 - 정부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합리적 제도 운영과 함께 적극적인 고용서비스 제공함으로써
- ☞ 공정사회 구현 및 나눔과 배려의 가치실현 필요

□ 적극적인 직무개발을 통한 직접채용 확대

-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이 바람직하나 업무의 성격상 장애인 고용이 곤란한 경우에는
 - 장애인 친화적 직무를 발굴하여 특정 직무*에 장애인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
- * (직원 복지 연계) 헬스키퍼, 텔레마케터, 콜센터 상담원, 주차관리원, 도서관 사서, 매표원 등
- 필요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모집 및 채용 대행서비스를 적극 활용
 - 일정기간 현장훈련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*, 기업 수요를 고려하는 맞춤형훈련** 등 활용 가능
- * 중증장애인 지원고용, 청년장애인 시험고용('11년 2,300명 제공)

□ 직접 장애인 고용이 곤란한 경우 간접고용 활용

- (연계고용제) 장애인 표준사업장, 직업재활시설,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·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 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,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

-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

* 감면현황 : ('08) 20억원 → ('09) 20억원 → ('10.8월) 24억원

- (자회사형 표준사업장)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경우

- 해당 표준사업장의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 고용률 산정 및 부담금 감면

- '11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% 세액감면 신설(조세 특례제한법 제85조의6),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허용(장애인고용촉진법 제22조제4항)

- 다만, 금융보험업의 경우 자회사를 허용하는 업종이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제한하고 있어 업종 선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

□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적극 활용

- (시설장비지원)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, 작업장비·공구, 작업 보조기기의 설치·구입·수리 등을 무상 지원

▲ 사업장당 3억원, 장애인 1인당 1천만원(중증은 1천 5백만원) 한도

- **(시설설치비용 용자)**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·편의·부대시설의 설치·구입·수리비용 등을 용자
 - ▲ 사업장당 15억원(장애인 1인당 5천만원) 한도, 연 3%,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
- **(고용관리비용지원)**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이들 중증장애인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
 - ▲ 작업지도비용 : 중증장애근로자 1~5명당 작업지도원 1인 배치하고 월 12시간이상 작업지도하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 지원
 - ▲ 수화통역비용 : 중증장애근로자 1~5명당 수화통역사 1인 배치하고 주 1회 이상 수화통역하는 경우 수화통역사 1인당 월 30만원 지원
- **(보조공학기기 지원)**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임대
 - ▲ 상용기기 : (임대) 사업장당 2억원·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최고 1천만원(중증 1.5천만원) 한도, (지원) 사업장당 5천만원·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 한도
 - ▲ 맞춤형기기 : 사업장당 5천만원·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최고 3백만원 한도
- **(근로지원인 지원)**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은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
 - 근로지원인을 장애인이 근무하는 곳에 배치·지원 (월 100시간 한도)

금융 · 보험업 장애인 채용 우수 사례

1. 국민연금공단

□ 기관 개요

- 현 원: 4,381명
- 장애인 고용률: 3.95%
 - 장애인 근로자: 139명(중증 34명)
 - 직 무: 가입자 관리, 노후설계 상담, 전산개발 등

□ 주요 특징

- 장애인 구분모집 10%
 - 신규채용 예정인원(320명)의 10%인 32명을 장애인으로 할당
 - 지역별로 구분모집을 실시하여 지방 거주 장애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 - 장애인 응시생 편의제공(시험시간 연장, 확대시험지 제공 등)
 - * 지체장애 1~2급, 뇌병변장애, 시각·청각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필요 여부 개별 유선 확인
- 장애인 가족 우대
 - 직계 존·비속이 장애인인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 전형 가점 부여
- 장애인 직원 국가대표 활동
 - 수영, 역도, 요트, 탁구, 하키, 탁구 등 6개 분야 국가대표 6명
 - 국가적 행사 참여 시 공가 부여

2. 삼성증권

□ 기관 개요

- 현 원: 3,117명
- 장애인 고용률: 2.73%
 - 장애인 근로자: 76명(중증 9명)
 - 직 무: 환경미화직무, 콜센터 상담원, 퀵서비스, 주차도우미, 자료실 사서 등

□ 주요 특징

- 급격한 고용률 상승: '04년 0.13%에서'10년 2.74%로 상향
- 신규채용 및 경력채용 시 장애인 가점제도 실시
- 직접채용을 위해 아웃소싱을 인소싱으로 전환
 - 파견으로 외주를 주던 '환경미화직무'에 장애인 직접채용
-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
- 사내 장애인 문화축제 개최하여 장애인 우수근로자 포상

3. 부산은행

□ 기관 개요

- 현 원: 2,814명
- 장애인 고용률: 1.95%
 - 장애인 근로자: 45명(중증 10명)
 - 직 무: 헬스키퍼, 사무보조, 영업상담 등

□ 주요 특징

- 매년 장애인 채용박람회에 참가하여 고용 확대
- 2009년 지역사회 '착한고용'참여 및 장애인 특별채용 실시

- 한국거래소, 기술보증기금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특별채용 실시
- 2010년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채용
- 차별 없는 인사제도 실시
 - 2008년 계약직 장애직원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, 2009년 3명 정규직 전환 등 성과를 낸 장애직원에게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
-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제공
 - 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등 활용
 - 매분기 장애인 직원모임(‘지란지교’) 운영
- 장애인 복리증진
 - 장애인 근로자 월 10만원 장애수당 지급, 연 1회 무료건강검진 및 장애유형별 추가검진 지원
 - 장애인 근로자 및 미혼자녀와 부모가 지출한 의료비 중 비급여성 항목에 대하여 의료비 보조 실시
 - 장애인 근로자 직계가족 사망 시 장례비 일체 지원 등